

수원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1가단57798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중소기업진흥공단

소송대리인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곽은정

변 론 종 결 2022. 11. 3.

판 결 선 고 2022. 12. 15.

주 문

1. 인천 강화군 C 묘지 893㎡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20. 8. 1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. 8. 19. 접수 제25485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8. 11. 9. D과 사이에, 대출금액 100,000,000원, 대출기간 2018. 11. 13.부터 2024. 11. 6.까지, 이율 연 2.86%(변동금리), 연체이율 연 12%, 원금은 3년 동안 거치한 후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고,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, 이에 따라 D에게 100,000,000원을 대여하였다.

나. D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21. 10. 27. 기준으로 D이 미지급한 대여원리금은 합계 101,318,512원이다.

다. D은 2020. 8. 18. 피고와 사이에 본인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묘지 893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20. 8. 19.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25485호로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0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라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100,000,000원,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94,773,000원, 주식회사 E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98,964,000원,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,000,000원, F에 대한 채무 7,893,000원 등이 있었고, 가액 49,98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6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, 이 법원의 G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 등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,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며,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,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98,964,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, 피고는 D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 그 채무관계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,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),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.

을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은 2019. 6.경부터 D과 박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박스를 공급하여 온 사실, 그런데 D은 2019. 12.부터 2020. 6.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140,998,000원 중 42,034,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8,964,000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,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, 즉 D은 2020. 8. 18. 주식회사 E이 아닌 피고 개인을 채권자로 하여 차용금을 100,000,000원, 변제기를 2021. 8. 18., 이자율 연 4%, 지연이자율 연 8%로 각 정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고,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, 채권최고액을 100,000,000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2016. 7. 19.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한 가압류등기(청구금액 98,000,000원), 2016. 7. 29. 채권자 재단법인 H에 의한 가압류등기(청구금액 4,590,000원)가 각 경료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

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선영